



# 삼척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시보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1171호

2021. 5. 14. (금)



시화-철쭉



시조-갈매기



시목-느티나무

## 고 시

- 삼척시 고시 제7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----- 2
- 삼척시 고시 제78호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 고시 ----- 5

## 공 고

- 삼척시 공고 제561호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입법예고 ----- 8
-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13호 삼척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결정공고  
----- 17

공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문화공보실 (전화 : 570-3229, FAX : 570-3132)

삼척시 고시 제2021 - 77호

#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제24조, 제25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5. 11.

삼척시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559-3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	비고
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사유	
(별지참조)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(☎570-3946~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1. 5. 11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순 번	중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
		주 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 사유
1	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 130-9	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559-3	20210511	신축건물	20090904	자연지명명칭 반영(문의재)

도로명주소 부여 내역

구분	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시일	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		계	2건					
부여	1	강원도 심천시 노곡면 종마음리 130-9	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제로 2559-3	20210511	신축건물	20090904	자연지명명칭 반영(문의제)	

삼척시 고시 제2021 - 78호

## 도로명주소 부여·변경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제24조, 제25조에 의거 우리 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·변경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5. 14.

삼척시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30 외 1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	비고
	주소	고시일	사유	고시일	부여사유	
(별지참조)		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(☎570-3946~9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1. 5. 14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

순 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		도로명	
		주 소	고시일	사 유	고시일	부여 사유
1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길 88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30	20210514	신축 후 출입구 위치 변경	20090626	역사인물이승휴의호 (동안)활용
2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122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안길 30	20210514	가설건축물	20090626	행정구역,지역위치 복합활용

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내역

구분	순번	종전주소		도로명주소		고시일	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		주소	계	주소	계					
변경	1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사둔길 88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30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30	20210514	신축 후 출입구 위치 변경	20090626	역사인물 이승휴의호(동안)활용		
부여	2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122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안길 30	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안길 30	20210514	기설건축물	20090626	행정구역, 지역위치 복합활용		

**삼척시 공고 제2021-561호**

「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 
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 
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11일

**삼척시장**

**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**1. 개정이유**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(2017.12.26.)으로 공  
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
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  
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**가. 공동이용시설 추가(안 제3조)**

- 커뮤니티, 학습·회의공간, 전시시설 등 주민의 문화·여가를 위하여  
필요한 시설
- 기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**나.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(안 제33조의2)**

-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익 목적의 활동기준 규정



-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
- 주민의 건강, 안전, 이익 보장 등 공동체 회복 활동
- 주민 편의,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
-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#### ○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

- 도시재생지원센터, 주민협의체, 사회적경제조직 중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·조합

다.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용법령 및 용어 정비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31일까지 삼척시장(참조 : 전략사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라. 의견제출 및 문의처

- 1) 주소 : (우)25914 삼척시 중앙로 296(교동), 삼척시청 전략사업과
- 2) 전화 : 033-570-4046
- 3) 팩스 : 033-570-3186
- 4) 전자우편 : fiesta@korea.kr

### 4. 그 밖의 사항

이 개정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(<http://samcheok.go.kr>) 입법/공고/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- 붙임 1.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관계법령 1부.  
3.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. 끝.

## [붙임 1]

삼척시 조례 제 호

##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5호에서”를 “제3조제6호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커뮤니티, 학습·회의공간, 전시시설 등 주민의 문화·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5. 그 밖에 삼척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6조제1항 중 “삼척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삼척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)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1.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
2. 주민의 건강, 안전, 이익 등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

3. 주민 편의,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

4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.

1. 제1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

2. 제19조의 주민협의체

3. 「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중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·조합

제34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 및 「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대하여는 「삼척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99조”를 “대하여는 「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」 제2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.

- 1.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
- 2. 주민의 건강, 안전, 이익 등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
- 3. 주민 편의,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
- 4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.

- 1. 제1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
- 2. 제19조의 주민협의체
- 3. 「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중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·조합

제34조(지원금액의 환수) 시장이 도시재  
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  
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 
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 및 「삼척  
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 
바에 따른다.

제35조(용자의 조건 등) ① (생략)  
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상환기간은 시

제34조(지원금액의 환수) -----  
-----  
-----  
「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-----  
-----.

제35조(용자의 조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
② -----

장과 용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, 용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「삼척시 재무회계 규칙」 제99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.

③ (생략)

-----  
 -----  
 ----- 대하여는 「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」 제2조-----  
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[붙임 2]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30조의2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2.>

1. 도시재생활성화지역
2.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

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,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12. 26.]

### 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3조(공동이용시설의 종류)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“놀이터, 마을회관, 공동작업장,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”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1. 26.>

1. 놀이터, 마을회관,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
2.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·세탁장 등 공동작업장, 화장실 및 수도
3. 어린이집·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
4. 마을방송국·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
5. 마을기업·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

#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

■ 조례·규칙 제명 :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(시행규칙안)	검토의견	
	수정안	검토사유



##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1-13호

## 삼척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결정 공고

「하수도법」 제61조 및 「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05월 13일

## 삼척시장

1. 적용대상지역 : 삼척시 공공하수처리구역 내
2.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: ₩2,957,000(원/㎡)
3. 부과대상
  - 공고일 이후 건축물 등을 신·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 10세제곱 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켜 공공하수도로 유입·처리하는 경우
4. 부담주체 : 건축물 등의 소유자(건축, 건설 중인 경우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)
5. 오수발생량 산정방법
 

환경부 고시 제2021-59호 『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』에 의하여 산정
6.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
  -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(㎡/일) ×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(원/㎡)
7. 납부시기
  - 건축물(시설물)의 준공검사 전까지. 다만,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·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(고지서에 의거 납부)
8. 기 타
  - 적용기준 : 공고 일부터 ~ 추후 공고 시 까지 (매년 공고)
  -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인·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  -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과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.